

전담조직 지정·위탁 취소 통지서

지정·위탁 기관	기관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주소	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설립근거
지정·위탁 취소	지정·위탁 날짜	
	지정·위탁 업무	
	지정·위탁 취소 날짜	
	지정·위탁 취소 사유	

「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·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·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전담조직 지정·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()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